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0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박수영・김기현・박성훈

강승규 · 곽규택 · 이헌승

나경원 • 백종헌 • 이인선

김종양・박수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

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

-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관도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함(안 제139조의2 신설).
- 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선서를 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예외로 인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을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신설, 안 제152조제2항 개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9조의2(사법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 해하는 행위
 - 2.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1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處한다"를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前項의

罪"를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한다.

①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2조의2(거짓 진술)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진술하거나 거짓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3조 중 "前條의 罪"를 "제152조 및 제152조의2의 죄"로, "供述한"을 "진술한"으로 한다.

제2편제10장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증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9조의2(사법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 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 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
	<u>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u> 는 행위
	3.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 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 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第152條(偽證, 謀害偽證) <u><</u> <u> </u>	(신)第152條(係證, 謀害係證)①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 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②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 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신 설>

2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7년 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제1항 및 제2항의 죄------

> 제152조의2(거짓 진술)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 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 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인 것을 알 면서도 진술하거나 거짓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第153條(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第153條(自白, 自首) 제152조 및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 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 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 한다.

<신 설>

제152조의2의 죄진술한	_
	_
	_
	_

----.

제155조의2(증인 등에 대한 폭행 · 협박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증언 또는 거 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